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1/20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대기환경 보전법	▷정의(용어)	2		2	- 대기오염물질 종류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전 시설	경영지원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2조2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	전 시설	경영지원팀
▷기후·생태계변화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3				-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은 염화불화탄소와수소염화불화탄소라 한다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종류	4				- 특정대기유해물질 종류 →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대기오염 방지시설	5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종류 →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냉매	16		6	-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전 시설	경영지원팀	
	▷배출허용기준				10조5	-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염화불화탄소 → 수소염화불화탄소 →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15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 1,2 현행과 같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와 같다)·특별시·광역시	전 시설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2/20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	23	11 12	26	<p>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 1항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 관리 권역" 이라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 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 한다)을 정할 수 있다. </p> <p>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이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p> <p>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p>	신규 설치시설	경영지원팀	

대기환경 보전법				<p>→ 1 ~ 8 현행과 같음</p> <p>→ 환경부장관 또는 시·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이하 "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붙일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p> <p>- 환경부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p> <p>→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p>		
	▷(변경사항 포함)		27	<p>-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기타 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신청</p>	LAY-OUT 변경시	경영지원팀
	▷사업장의 분류	25	13	<p>-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5종으로 분류</p> <p>→ 시행령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 참조(사업장의 분류기준)</p>	기타 해당 사업장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5/20
대기환경 보전법					<p>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p>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0	15	35	- 설치 또는 변경 완료후 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관할 관청에 가동개시 신고 -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 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규 배출시설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생산팀 설비기획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	31		36	- 사업자는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운영 → 방지시설 미가동, 희석 배출 → 고장, 훼손의 방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 배출관을 등을 설치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 관련대장의 기록 보존	전시설	경영지원팀 생산팀 설비기획팀	
	▷측정기기의 부착	32	17		-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 → 시행령 '별표 2' 참조(적산전력계 부착대상)	전 방지시설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의 등록	32조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 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 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6/20

대기환경 보전법	▷ 측정결과 등의 공개		19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 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 등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영지원팀
	▷ 개선명령	33	20 ~ 22	38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조치 명령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이행 및 결과 보고 -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방지시설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 조업정지명령 등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불이행 및 결과 부적합시 조업정지 및 가동제한 	해당시설	경영지원팀
	▷ 조업시간의 제한 등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경영지원팀
	▷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			46	→ 별표 10 참조		경영지원팀
▷ 배출부과금	35	23~29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먼지) 배출시설에	경영지원팀	

<p>대기환경 보전법</p>				<p>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p>대한 기본부과금 부과</p>	<p>경영지원팀</p>
	<p>▷배출부과금의 감면</p>	<p>35조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 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p>해당시설</p>	<p>경영지원팀</p>
	<p>▷배출부과금의 조정</p>	<p>35조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과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가 처음과 다른 경우 이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 가능하다. -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해당 시설</p>	<p>경영지원팀</p>

법규 등록부

대기환경 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허가의 취소 등 	30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 기준 이내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배출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 → 1일 24시간 조업 -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거짓으로 제출 시 추정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 배출량 	전 시설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한 경우 →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 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1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 제1항에 따른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시설	경영지원팀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9/20

대기환경
보전법

- 제32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2조 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 제40조 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41조 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2조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 제19호 또는 같은 항제 2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규 등록부

대기환경 보전법	▷과징금처분	37	38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정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조업정지에 같음하여 과징금 처분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 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가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사업장 : 2.0 → 2종사업장 : 1.5 → 3종사업장 : 1.0 → 4종사업장 : 0.7 → 5종사업장 : 0.4 	과징금 처분	경영지원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 및 변경 신고 절차 등	38의2	38의2	51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품 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법규 등록부

대기환경
보전법

-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및 제3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규 등록부


<p>대기환경 보전법</p>	<p>▷자가측정</p>	<p>39</p>	<p>→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p> <p>→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p> <p>- 사업자는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먼지, THC, SOx, 기타</p>	<p>경영지원팀</p>
---------------------	--------------	-----------	---	-------------------------	--------------

법규 등록부

대기환경 보전법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52	- 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 21호 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 자동전송 안하는 사업장의 배출구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비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월 2회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을 해야한다.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전 시설	경영지원팀
	▷환경기술인 신고	40	39	53 ~ 54	-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 - 별표 8 종별 산정기준의 변경 (고체연료사용량 → 오염물질배출량)	환경관리인	경영지원팀
	▷연료용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 기준	41	40	55	- 해당 지역에 고시된 황함유 농도 이하의 유류를 사용	해당없음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비산먼지의 규제	43	44	57	-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건축, 토목공사	경영지원팀

대기환경 보전법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의 규제	44	45	~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시 →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 시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차사항 변경 시 	활성탄 흡착시설 설치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절한 방지시설 설치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기환경 보전법							
				<p>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p>-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45		<p>-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p>	해당 배출시설	경영지원팀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의 기준 등		61	<p>-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와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p>	해당 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57	53	78	<p>- 자동차 소유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p>	회사 소유 차량	경영지원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58		<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p> <p>→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p> <p>-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p>	회사 소유 차량	경영지원팀	

		<h1 style="margin: 0;">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16/20
대기환경 보전법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 의 10		<p>을 설치하는 자</p> <p>→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p> <p>→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 공급시설</p> <p>-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 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p> <p>→ 수소전기자동차의 지역적 배분</p> <p>→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p> <p>→ 교통량</p> <p>→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p>	회사 소유 차량	경영지원팀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1
개정번호/일자	3/2023.11.07
페이지	17/20

대기환경 보전법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 의 11	<p>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수소연료고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회사 소유 차량	경영지원팀
	▷인·허가 등의 의제	제58조 의 12	<p>-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허브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p>	인·허가 재검토	경영지원팀

대기환경
보전법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법규 등록부

대기환경 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77	125 ~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 교육 의무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담당자 교육	경영지원팀	
	▷ 벌칙	8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자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벌칙 규칙	경영지원팀	


법규 등록부


대기환경 보전법	▷과태료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1 ~ 3차 경고, 4차 10일 조업정지 및 과태료 500만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과태료 규칙	경영지원팀
	▷규제의 재검토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 2022년 1월 1일 	규제사항 재검토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악취방지법	▷정의	2			- "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캡탄류.아민류 및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지정악취물질"는 악취 원인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등	전 시설 고무 악취		
	▷지정악취물질			2	- 별표 1			
	▷악취배출시설			3	- 별표 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6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 →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강서동 지역(예상)
	▷배출허용기준	7	1의2		-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악취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8	-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 - 별표 3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 2	-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저감기술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약취방지법	▷약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관리지역안에 약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배출되는 약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약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시에 제출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의 가동전 필요한 조치 - 약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할 경우 6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약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약취방지계획에 따라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약취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제8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자진하여 제출하고 개선 	약취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약취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조업정지명령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약취배출시설	경영지원팀
	▷과징금처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약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자에게 약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약취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13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악취방지법	▷개선권고 등	14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		
	▷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6		- 개선권고를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함		
	▷벌칙	26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8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과태료	30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행정처분기준			19	→ 별표9 참조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3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1/4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1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		경영지원팀
	정의	2			-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 → 비산먼지 → 소음 및 진동 → 수질오염물질 → 약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토양오염물질 → 폐기물		경영지원팀
	통합허가	6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폐수를 일일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령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	환경시설 (대기/수질/폐기물 외)	경영지원팀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3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2/4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p>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제10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주인 자는 재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p> <p>-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p> <p>-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 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환경시설 (대기/수질)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 제출		14	- 별표10 제 1호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참조		경영지원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24	-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가능		경영지원팀	
최적가용기법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경영지원팀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3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3/4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여부 		경영지원팀	
	최적사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사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 최적사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 참조 		경영지원팀
	연간 보고서		33			경영지원팀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4월 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사업자는 법 제33조에 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간보고서 작성	경영지원팀 구매팀
	양벌규정		46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3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4/4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별표12	<p>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저장용량이 20m³이상인 유류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진 방류벽과 저장용량의 90퍼센트 이상 주입 시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공급차단 장치 또는 수위 경보장치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p> <p>-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운전상황을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비상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p>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1/12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정의(용어) ▷시행령 별표1	2	2		1. "대기관리권역"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해당	경영지원팀	
	▷「대기환경보전법」 과의 관계	3			-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법규	경영지원팀	
	▷사업자의 책무	5			-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지방자치단체	경영지원팀	
	▷사업장설치의 허가			8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배치도, 시설별 명칭, 용량, 수량 →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환경시설 (대기/수질/폐기물 外)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2/12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본계획의 수립 등	9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 →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해당	경영지원팀
	▷변경허가, 변경신고		9		- 대기환경관리 대상 물질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먼지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오존(O3)		
					-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3/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사업장의 설치신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신고시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해당 사업장 신고	경영지원팀
	▷사업장설치의 허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설치, 허가	경영지원팀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허가의 제한</p>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 것으로 본다. -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p>해당 사업장의 허가 제한</p>	<p>경영지원팀</p>
-------------------------------	----------------	-----------	---	----------------------	--------------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5/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허용용량의 할당 등	17		<p>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p>-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p> <p>→ 지역배출허용총량</p> <p>→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p> <p>→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p> <p>→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p> <p>-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6/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의신청	18		<p>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울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배출허용총량 할당받은 사업장	경영지원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 참조 → 최근 2년동안 초과한 경우 <li style="padding-left: 20px;">질소산화물 : 4톤/년 , 황산화물 : 4톤/년, 먼지 : 0.2톤/년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7/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산정 결과의 기록, 보존	20	21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총량관리사업장 결과 기록	경영지원팀	
	▷측정기기의 부착, 가동 등		22	- 별표 3 참조 →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제외한다.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 2)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구 3)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 배출구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구 5)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 6) 전년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톤 이하, 황산화물 3톤이하, 먼지 0.15톤 이하인 배출구	해당 시설측정기기 부착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감량		24 26	- 별표 4, 5 참조	배출허용총량 증량, 감량	경영지원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20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 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	총량관리사업장 이전	경영지원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20	받은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당 총량관리시설	경영지원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1	-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가능	배출허용총량 지역	경영지원팀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22	-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 포함)해야 한다.	해당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 작성	경영지원팀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21	-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해당 배출허용총량 조정	경영지원팀
	▷총량초과과징금	22	-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	해당 총량초과과징금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p>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한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징수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과징금 기준, 방법	경영지원팀	
	▷과징금의 산정기준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 초과율별 부과 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 참조. 	과징금 산정기준	경영지원팀	
	▷과징금의 납부통지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과징금 납부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대기-04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10/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허가의 취소 등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취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폐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경영지원팀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용 차량	경영지원팀(총무)	

법규 등록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27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영업용 차량 지원	경영지원팀(총무)
	▷ 녹성 등 자동차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28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업용 차량 사용 제한	경영지원팀(총무)
	▷ 녹성 등 자동차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28조의 2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영업용 차량 사용 제한	경영지원팀(총무)
	▷ 벌칙	45 ~ 47			- 제28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시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벌칙 기준	경영지원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 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과태료 기준	경영지원팀
	▷과태료의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정의(용어)	2		2	- 기타 수질오염원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수질오염물질 종류	경영지원팀
				3	-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제3조 [별표2]	- 기존 수질오염물질 → 구리와 그 화합물 외 58종		
					- 추가물질 → 과불화 옥탄산 → 과불화옥탄술폰산 → 과불화핵산술폰산		
				4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6	- 폐수배출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7	-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8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수질 방지시설	경영지원팀
	▷수질의 상시측정 등	9			-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 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수역 하천·호소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p>▷수질의 상시측정 등</p> <p>▷배출등의 금지</p>	제9조의 4			<p>-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위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환경부자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공공수역 하천·호소	경영지원팀
		15			<p>- 공공수역에 폐수, 유류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p> <p>-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는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p> <p>-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p>	공공수역 하천·호소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사고 신고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오염원 조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6	제22조의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오염사고 발생시 관할관청에 신고 -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된 지류 또는 지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유출 사고 하천의 대표지점 폐수배출시설 공공수역, 상수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p>▷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p>	24			<p>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p> <p>-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p>공공수역, 상수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p>	<p>경영지원팀</p>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수질-01
							개정번호/일자	3 / 2023.11.07
							페이지	5/14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오염원의 조사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 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한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폐수배출시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32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또는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시·도지사는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폐수 배출시설	<p>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p> <p>경영지원팀</p> <p>경영지원팀</p>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33	31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허가 혹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규 설치시설	경영지원팀
	▷방지시설의 설치, 설치 면제 및 면제자 준수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을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존 시설 변경 시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방지시설설치의 면제 기준		33		-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경영지원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38	- 폐수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될 경우 - 폐수배출량 변경에 따라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LAY-OUT 변경시 기타	경영지원팀
	▷위탁처리대상 폐수			41	-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위탁 폐수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42	-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 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 기관(이하"폐수처리업자 등" 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위탁 폐수배출시설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 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 폐수배출시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7	34	46	- 설치 또는 변경 완료후 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관할 관청에 가동개시신고	신규 설치시설	경영지원팀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 시작 신고의 대상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가동시작의 신고				- 사업자가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 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 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시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38	49	-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 폐수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 시설	경영지원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 오염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 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 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경영지원팀	
▷측정기기의 부착	38의2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 관리기준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 방법, 시기 등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등 	38의3			<p>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 7' 참조(측정기기 부착대상) -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조치 명령 -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정지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지원팀 생산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 7' 참조(측정기기 부착대상)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39	40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조치 명령 	전시설	경영지원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정지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허가의 취소	42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고한 경우 -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전 시설	경영지원팀
	▷과징금처분	43	58	61	- 조업정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조업정지에 강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폐쇄 조치	전 시설	경영지원팀 설비기획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44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폐쇄 조치		경영지원팀
	▷오염물질 측정	46			-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함		경영지원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46조2		63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특정수질 배출량 조사	경영지원팀
	▷환경기술인 신고	47	59	64	-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선임	환경기술인 담당자	경영지원팀
	▷비점오염원의 관리	53	72	73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전 시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p>- 사업자는 법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 (이하 이항에서 "변경승인 등"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날 변경승인 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 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p>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53조3			<p>-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p> <p>- 성능검사 후 사항 변경 시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p> <p>- 성능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판정 받은 날부터 5년</p> <p>-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시 성능검사 판정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p>	신규 비점오염저감시설	경영지원팀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53조4			<p>-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p> <p>-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이 실제 시설과 다른 경우</p>	신규 비점오염저감시설	경영지원팀
	▷기타수질오염원의 실시 신고 등	60			<p>-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p>	해당 시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66조2			<p>관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영 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을 관할받을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 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p>-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p>	폐수 위탁 시	경영지원팀

법규 등록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물환경보전법	▷ 벌칙	75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배출시설 설치, 조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조업정지/폐쇄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 →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위반 →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벌칙 규정	경영지원팀 생산팀 설비기획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1/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정의	2			- "오염부하량"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 - "환경기초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등			7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1)에 따른 기준 -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 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천구역 등 수질오염원 관리	경영지원팀
	▷토지 등의 매수 대상 지역			11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2/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	12			<p>-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 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p> <p>-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받은 자는 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p>	양산시 폐수종말처리장	경영지원팀
	▷사업장 관할		13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p>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22	<p>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 → 영 별표 1에 규정된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p>		
	▷오염총량관리비용 등 의 우선지원	17			<p>-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p>	오염총량관리비용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3/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18	20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빗물.오수.폐수 및 소화수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외 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 → 유독물영업 등록 자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	공장내 배수로	경영지원팀	
	▷오염부하량의 측정 기기				24	-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법 12조제4항에 따라 부착·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 -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수처리장 수질자동 측정기기	경영지원팀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33	-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 - 폐수의 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운영기준 준수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경영지원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기준				34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기준 - 별표 7	완충저류시설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4/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9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	폐수배출 공정	경영지원팀	
	▷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제출			36	- 다음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제출 → 제품생산공정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공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시설 내역, 처리공정,처리 후의 배출량 →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수계 및 하류 인접 취수시설 내역 → 사용량 및 배출량 저감계획,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 및 투자계획 → 시정요구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폐수배출 공정	경영지원팀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9			-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 관거의 관리 등	20		38	-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 - 10년	하수관거, 배수관거 검사	경영지원팀	
	▷ 관거의 개선명령			39	-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정함	하수관거, 배수관거 개선	경영지원팀	
	▷ 인·허가등의 의제	28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인.허가 관리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5/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의 설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자를 말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낙동강수계상수원	경영지원팀	
	▷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 	각 하천 취수시설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6/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	44		제44조의 2	<p>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 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 신세 강수원 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 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의 댐 주변지역 면적 비율</p> <p>-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p> <p>-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p>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경영지원팀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제44조의 3			<p>- 영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 관리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p>	토지 등 공동사유자 지원	경영지원팀
	▷벌칙							<p>-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p> <p>-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p>	벌칙 기준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수질-02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7/7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과태료	46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과태료 기준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폐기물 관리법	용어의 정의	2			- "폐기물"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 사업활동에 필요없는 물질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		생산팀 경영지원팀
	사업장의 범위		2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의 유해 물질 함유 기준 등			3	- 지정폐기물의 종류 - "시행령 별표 1" 참조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 3" 참조		
	에너지회수기준			3	-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 에너지의 회수효율이 75퍼센트 이상 - 회수열을 전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		
	폐기물처리시설			5	"시행령 별표 3 참조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3의2			-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한다. -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 -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자는 오염된 환경을 보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시행령 별표 2" 참조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2/10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됨 -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안됨 				
	폐기물의 처리기준등	1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 및 방법에 따름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 →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및 보관 용기 구분	생산팀 경영지원팀 생산팀		
	침출수 처리기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경영지원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잔재물,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고철·폐포장재·종이팩·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절단 →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폐기물처리장소 외 폐기	경영지원팀 생산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3/10
폐기물 관리법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16 조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 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신고 음식물폐기물 공동처리계획	경영지원팀 생산팀 경영지원팀
			제16 조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 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법 제15조의 2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 이내에 별지 제4호의 10서식에 따른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11서식에 따른 신고 -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의2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입·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 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 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11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4/10
폐기물 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16조의 7	<p>서식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p>→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p> <p>→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p> <p>→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자 수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p> <p>-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시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 할 수 있다.</p> <p>-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변경신고</p> <p>→ 제6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의 보고</p>	음식물폐기물 공동처리	경영지원팀 전 부서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6조의 8	<p>- 제8조의4 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자, 제18조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의2 제3항 및 제17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p> <p>-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 부터 제출받을 것</p> <p>→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p> <p>→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p>- 제68조의4 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 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이하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p> <p>-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p> <p>→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p>	위탁·수탁의 기준절차	경영지원팀 전 부서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5/10
폐기물 관리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등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정기점검표	경영지원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1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포함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자 - 폐기물인계서를 작성대상이 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고자할 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고사항 또는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경영지원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변경시에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 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검토 변경신고서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경영지원팀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6/10
폐기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관할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배출일로 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고 -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교부 받음 -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폐기물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 새로운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가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정기점검표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p>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 인계서</p>	<p>생산팀</p> <p>경영지원팀</p> <p>경영지원팀</p> <p>경영지원팀</p>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준수 대상 업종및 규모 - "별표 5" 참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처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하면 안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1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에 해당하는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유 등 각각 월 50KG 또는 합계 100KG 이상 → PCBs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폐기물처리계획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분석결과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7/10


<p>폐기물 관리법</p>	<p>사업장폐기물의 인수,인계</p> <p>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의무</p>	<p>18의2</p>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5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 다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별지4호의2 서식의 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6개월) 배출량의 30/100증가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관리공단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폐기물 인수,인계 시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 중 기계유, 작동유 외 → 지정폐기물 외 오니, 분진, 폐흡착재 등 → 그외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에서 지정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도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 -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 작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 자료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 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올바로시스템</p>	<p>경영지원팀</p>
--------------------	---	-------------	-----------	--	---------------	--------------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8/10	
폐기물 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22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계약업체 검사여부 확인	경영지원팀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23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자료 작성하여야 함. → 스스로 작성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25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25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지정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30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35		- 폐기물처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주는 폐기물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사업주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교육수료증	경영지원팀
	교육대상자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17	50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폐기물처리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폐기물 관리법	장부의 기록.보존	36		-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폐기물인계서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	처리실적보고서	경영지원팀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58	-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인계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 장부를 기록, 보존한 것으로 본다.		
	보고서 제출	38		-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청에 제출		
	벌칙	63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폐기물을 버린 자 →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64			
			65			
	과태료	68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3를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확인 안하고 위탁한 경우 →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 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 시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1
							개정번호/일자	2 / 2023.11.07
							페이지	10/10
폐기물 관리법					→ 제38조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정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제품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포장재 수입 시	구매팀
	▷포장재의 재질, 구조 평가 등	9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 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 - 포장재 재질 및 구조,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포장재 수입 시	구매팀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9조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이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포장재 수입 시	구매팀 개발팀 생산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2/5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9조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폐기물부담금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자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폐기물부담금)을 매년 납부 	수입 원,부자재	구매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 대상품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 용기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및 그 포장재 - 기타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 	PVC계열 제품	개발팀 생산팀	
	▷제조업자의 폐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 -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PVC계열 제품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3/5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12의3		5	-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를 받고 5월 20일까지 납부 -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서, 구매전표	구매팀, 재무팀, 경영지원팀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6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	- 전년도 제품출고실적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 실적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7			-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눠 낼 수 있다. - 납기부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7월 2일일까지, 제3기분은 9월20일까지, 제4기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	- 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 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지원팀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10조3					-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4/5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조업자들의 재활용 의무	16			<p>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 이라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재활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다.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	경영지원팀 전 부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5/5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분담금 등	29			<p style="color: red;">조합원인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color: red;">-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한다.</p>	분담금산정	경영지원팀 생산팀
	▷보고 및 검사 등	36			<p>- 다음에 해당하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폐기물배출자</p> <p>-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p>	생산실적, 수입실적	경영지원팀
	▷보고 및 검사 등			26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한 경우		
	▷장부의 기록, 보존			27	<p>-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 수입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할 장부 → 별지 제18호서식 -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p> <p>-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p> <p>-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 보고나 자료</p>	관리대장	구매팀
▷벌칙 및 과태료		39의 2			<p style="color: red;">- 제9조의4 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p> <p style="color: red;">- 제25조의4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준 자</p> <p style="color: red;">- 제9조의3 제2항으로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p> <p style="color: red;">-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지한 자</p>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폐기물-03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1/4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자원순환 기본법	▷정의(용어)	2			-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의 재사용·재생이용	경영지원팀 생산팀
	▷기본원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사업자의 책무	6			-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 구조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순환자원의 인정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3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2/4
자원순환 기본법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1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상태로 수분 함유량이 85% 이하거나 고형물 함유량이 15% 이상인 것 -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 X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성과관리 목표 설정하여 관리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 -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영지원팀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관리	1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목표 수령 -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경영지원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자원순환이용성 평가	경영지원팀 생산팀 협력업체	
▷폐기물처분부담금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추분하는 경우 처분부담금 부과 -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경우, 100분의3에 해당되는 가산금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3
						개정번호/일자	1/2023.11.07
						페이지	3/4
자원순환 기본법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17		→ 별표 5 참조		경영지원팀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부과	18		→ 별표 6 참조 -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경영지원팀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 절차 등	19		-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경영지원팀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21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 유예 가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경영지원팀	
	▷ 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22		-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 카드 승인일 = 납부일		경영지원팀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23		-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환급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폐기물-03
						개정번호/일자	1/2021.11.07
						페이지	4/4
자원순환 기본법	▷이의신청		24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통지나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경영지원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19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처리계획서 - 감면받으려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 첨부 →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분할납부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6호 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분할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하고, 제2회분은 7월 20일까지로, 제3회분은 9월 20일까지로, 제4회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		경영지원팀	
	▷과태료	36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별표 7 참조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화학물질 관리법	▷정의(용어)	2			- 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성, 위해성, 취급시설 등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	톨루엔, 벤젠 등	생산팀
	▷적용범위	3			-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관련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관할 소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10		4	-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생산팀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11	6	5	-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조사 실시 (배출량조사 전면확대)	사업장 내 전체화학물질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11조의2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 전체화학물질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12		6	-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공개	사업장 내 전체화학물질	경영지원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7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3		<p>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p> <p>→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p> <p>- 제 2항제2호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기준을 지켜야 함.</p> <p>→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p> <p>→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p> <p>→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p> <p>→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p>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생산팀 경영지원팀 구매팀 생산팀 구매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8	<p>-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같은 법 제10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p> <p>→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 같은 법 시행규칙</p>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2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부서별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안전교육 수료	각 부서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13			-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서별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안전교육 수료	각 부서 담당자	
▷개인보호구 착용	14	9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개인보호구 착용			
▷진열량·보관량 제한	15	10		→ 유해화학물질 진열, 보관량을 제한하고 기준량 초과하여 진열, 보관 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확인	자체점검 check list	생산팀 경영지원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16	12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	자체점검 check list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18	14		-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물질 제조·수입· 사용 허가 등	19	16	15	-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시 사전에 허가 득 -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경영지원팀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20			-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h1 style="margin: 0;">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1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4/15
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 제출	23	19	<p>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학교 →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 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경영지원팀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1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5/15
화학물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1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6/15
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 등	23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이행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3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경영지원팀	
	▷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등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관리법	▷안전진단 등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 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 안전진단	경영지원팀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서를 모두 이행한 경우 이행결과 보고서 에 개선명령 이행 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취급시설 개선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 영업 등 지자체 등록제에서 환경부 허가제로 전환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 결과서 -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저하는 바에 	유독물 영업허가	경영지원팀
-------------	--------------	----	----	---	----------	-------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1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9/15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9	<p>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간에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29	31	<p>-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p> <p>→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p> <p>→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p> <p>→ 항만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p> <p>→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p> <p>→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p> <p>→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p>	영업허가 면제	경영지원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30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p> <p>→ 제35조에 따라 허가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p>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31	32	<p>-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시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도 미침</p> <p>→ 단, 벌칙을 적용하지는 않음</p>	도급관리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32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경영지원팀 부서별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3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		경영지원팀


<p>화학물질 관리법</p>	<p>▷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p>	<p>34의2</p>		<p>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p>-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취소 등</p>	<p>35</p>		<p>-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영업허가 취소</p>	<p>경영지원팀</p>


화학물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3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단일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사전진단 및 대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 5년마다 작성 	유해관리계획서 작성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3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자료 제공의 요청	4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경영지원팀 영업팀 구매팀

 화승알앤에이		<h1>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1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14/15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53	<p>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경영지원팀	
	▷벌칙	57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경영지원팀			
		58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한 자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경영지원팀			
		59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생산팀 경영지원팀			


HWASEUNG 화승알앤에이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화학물질-01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15/15
화학물질 관리법	▷규제의 재검토			61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 2021년 6월 30일 →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경영지원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5	→ 별표5 참조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의(용어)	2			- 화학물질, 혼합물, 기존화합물질,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위해성 등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적용범위	3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 1 ~ 14 (현행과 같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업어자재 및 허용물질		
	▷사업자의 책무	5			-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2/12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등	10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경영지원팀	
	▷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방법			5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화학물질 등록	경영지원팀	
	▷ 변경등록·변경 신고 등	12	10조2	9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명칭, 연간 제조량, 연간 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용도 → 수입자, 제조자의 구성 -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로서 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화학물질 변경 및 신고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3/12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학물질 등록 조치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1의3 (현행과 같음) →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 2 ~ 8 (현행과 같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화학물질 등록 생략		
	▷ 과징금의 부과	17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하지 않거나 다르게 등록할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를 경우 			
	▷ 유해성 심사	1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지원팀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해성 심사 결과의 통지 등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성 심사	
	▷유해성평가 등	19	16	26	-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 실시	유해성 평가	경영지원팀
	▷유해성심사 결과 공개	21		28	- 유해성심사 결과 공개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유독물 여부 등)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	24	18	32	-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위해성평가 전담인력 양성	경영지원팀
	▷허가물질의 지정	25	19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 수입, 사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물질 파악	경영지원팀

		<h1 style="text-align: center;">법규 등록부</h1>				문서번호	화학물질-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5/12
법규명	법규 요구사항	관련법규			요구내용	적용시설, 설비 공정 및 활동	관련팀
		법	시행령	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허가물질의 지정·고시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위해성 →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 제조·수입·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 (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 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 허가유예기간" 	허가물질 파악	경영지원팀

문서번호	화학물질-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6/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그 도입기시에 관한 정보
- 환경부장관은 법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경우
 - 허가유예기간
 -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 정하는 사항
-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허가면제용도
 - 허가유예기간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의 지정 등	27	20	<p>수령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p> <p>-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 성분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지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p>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지정	경영지원팀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29	35	<p>-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p> <p>→ 양도자가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p> <p>→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p> <p>-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p>	MSDS 등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MSDS 등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팀
	<p>▷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p>	36	<p>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p> <p>-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 별지 제25호 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 화학물질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p>			
	<p>▷ 녹색화학센터의 지정</p>	24	<p>-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화학물질관리협회 → 5 (현행과 같음)</p>			경영지원팀
	<p>▷ 자료제공의 요청</p>	제29조의 3	<p>-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p>		MSDS 등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팀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p>	<p>▷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p>		<p>31</p>	<p>→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 · 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p> <p>-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p>→ 제20조제3항에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p> <p>-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p>→ 1의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p> <p>→ 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 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p> <p>-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p> <p>→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p>		<p>경영지원팀</p>
-------------------------------	--------------------------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품에 함유된 중점 관리물질의 신고	32	41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제품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신고	자발적인 위해성평가 실시	경영지원팀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42	51	-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경영지원팀
	▷자료제공의 요청	제43조의 2		-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MSDS 등 공급망 관리	
	▷검사기관		53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 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자료보호의 요청		55	-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MSDS 등 공급망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서류의 기록 및 보존	44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 등록 신청	경영지원팀
	▷규제의 재검토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영지원팀
	▷벌칙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 →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수입한 자 		경영지원팀

법규 등록부

문서번호	화학물질-02
개정번호/일자	2/2023.11.07
페이지	12/12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p>	<p>▷ 벌칙</p>	<p>51</p>		<p>→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p> <p>-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p> <p>→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p> <p>→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p>		<p>경영지원팀</p>
---	-------------	-----------	--	--	--	--------------